

[붙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2023년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제9차 법정보수교육 **개별과정** 안내

I. 사업개요

1. 행 사 명 : 2023년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제9차 법정보수교육 - 개별과정
2. 주 제 : [중급과정]인지행동치료 워크숍
3. 내 용 : 가. 인지행동치료 세션 구성, 감정, 자동차 사고 인지
나. 자동차 사고 평가, 자동차 사고 반응법, 치료과정의 문제점
4. 일 시 : 2023년 7월 4일(화) 09:00 ~ 18:00 (08:45부터 접수)
5. 장 소 : 다래헌 강당(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180, 효평빌딩 1층)
6. 대 상 :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정신건강수련전문요원
7. 인 원 : 100명
8. 이수시간 : **8시간 (1, 2급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정신건강수련사회복지사 동일)**
 - ※ 법정보수교육으로 **일일 8시간 교육에 모두 참여해야만 법정보수교육 개별과정 이수 시간(총 8시간)이 인정됩니다. 이수시간을 분리하여 인정하는 것은 불가**하오니 이 점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오전 혹은 오후만 이수하는 것은 불가(보건복지부 답변)합니다.**
 - ※ 이수 시간을 분리하여 인정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지각 등의 사유로 **교육의 일부만 참여했을 시 이수 시간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필히 지각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9. 교 육 비 : 56,000원
 - ※ 교육비 납부 방법 : 국립정신건강센터→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보수교육 신청 후 KG이니시스 결제진행 (**결제방법 : 카드,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 ※ 교육비 영수증 :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 전문요원 관리시스템 가입 시 입력한 본인의 e-mail로 자동 발행
10. 접수기간 : **2023년 6월 12일(월) 09:00 ~ 6월 23일(금) 24:00 까지**
 - ※ 선착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며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과 교육비 결제가 완료되어야 최종 접수완료
11. 유의사항 : 교육 관련 메일링 또는 SMS의 원활한 발송과 교육이수 처리를 위해 반드시 협회 홈페이지 및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시스템 개인정보(소속 / 연락처 / 이메일)를 확인하여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 요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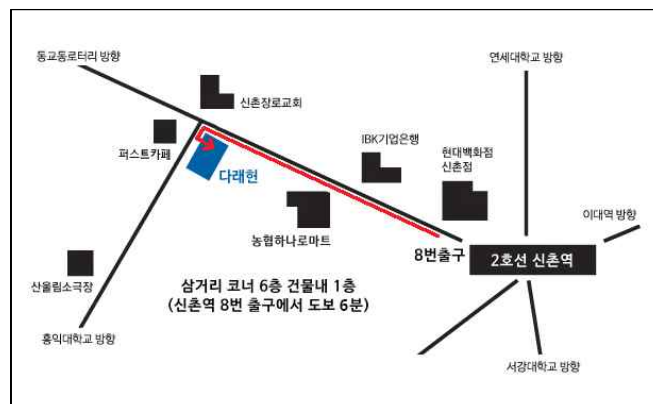
II. 교육안내

1. 교육일정 및 세부내용

2023년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제9차 법정보수교육 - 개별과정	
08:45 ~ 09:00	오전 교육 등록 확인
09:00 ~ 13:00	인지행동치료 세션 구성, 감정, 자동차 사고 인지 김선민(이화여자대학교 초빙교수)
13:00 ~ 14:00	점심시간 및 오후 교육 등록 확인
14:00 ~ 18:00	자동차 사고 평가, 자동차 사고 반응법, 치료과정의 문제점 김선민(이화여자대학교 초빙교수)

2. 교육장소 안내

1) 주소 : 다래현 강당(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180, 효평빌딩 1층)



■ 대중교통

지하철 2호선 신촌역 또는 경의중앙선 홍대입구역

■ 버스

교육장 인근 정류장 신촌오거리 현대백화점, 동교동삼거리, 신촌농협 하나로마트

■ 기차

서울역(KTX) : 공항철도 서울역(인천공항2터미널행) > 공항철도 홍대입구역 하차

■ 고속·시외버스

-동서울버스터미널 : 2호선 강변역 승차(성수행) > 2호선 신촌역 하차

-서울고속버스터미널 : 3호선 고속터미널역 승차(대화행) > 2호선 을지로3가역 > 2호선 신촌역 하차

■ 주차안내(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부득이 차량을 가져오시는 분들은 현대백화점 유료주차장 이용 바랍니다.
(최초 1시간 무료, 초과 10분당 1,000원)

Ⅲ. 등록안내

1. 등록

1) 접수기간 : 2023년 6월 12일(월) 09:00 ~ 6월 23일(금) 24:00 까지

2) 접수방법 : 온라인 사전접수 (**당일 현장접수 없음**)

(1)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 전문요원 관리시스템' (<http://www.ncmh.go.kr/>) 로그인

(2) 정신건강 전문요원 관리시스템 사이트 상단 <보수교육> 메뉴의 '보수교육 신청 일정'으로 이동

(3) 2023년 7월 4일(화) '2023년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제9차 법정보수교육 -

개별과정' 교육 안내 클릭

(4) **하단의 '신청' 버튼 클릭 후 교육비 결제 진행 (결제방법 : 카드, 무통장입금, 계좌이체)**

3) 교육비 : 56,000원

※ **교육비 영수증 :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 전문요원 관리시스템 가입 시 입력한 본인의 e-mail로 자동 발행**

4) 유의사항

(1) 교육 관련 메일링 또는 SMS의 원활한 발송과 교육이수 처리를 위해 반드시 협회 홈페이지 및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전문요원 시스템 개인정보(소속 / 연락처 / 이메일)를 확인하여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 요망

2. 취소

1) 취소신청 방법

(1)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 전문요원 관리시스템' (<http://www.ncmh.go.kr/>) 로그인

(2) 정신건강 전문요원 관리시스템 사이트 상단 <보수교육> 메뉴의 '보수교육 신청 일정'으로 이동

(3) 2023년 7월 4일(화) '2023년도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제9차 법정보수교육 -

개별과정' 공지 클릭

(4) **하단의 '취소' 버튼 클릭 후 환불처리 진행**

2) 교육비 환불기준(국립정신건강센터 관리시스템 환불 규정 기준)

교육	교육취소(환불신청)시점	제9차 법정보수교육 기준	환불금액
제9차 법정보수교육 - 개별과정 7월 4일(화)	해당 교육일로부터 5일전까지	~ 6월 29일(토)	100% 전액 환불
	교육일 4일전부터 교육일 2일전까지	6월 30일(금) ~ 7월 2일(일)	50% 환불
	교육일 전일부터 교육당일까지	7월 3일(월) ~ 7월 4일(화)	환불불가

※접수기간 마감 후 정신건강전문요원시스템에서 교육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접수기간 마감 후 교육취소는 협회메일로 하단의 내용을 작성하시어 요청주시기 바랍니다.

①성함 ②생년월일 ③취소할 법정보수교육 차수와 개최날짜
④결제방법(무통장입금인 경우, 예금주/은행명/계좌번호)

IV. 법정 보수교육 안내

1. 법정보수교육 대상

- 근거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보수교육)제1항
-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보수교육(이하“보수교육”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보수교육 대상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보수교육 방법	대면 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보수교육 시간	매년 12시간 이상 * 공통과정 4시간 가. 정신건강복지 정책과 관련법령(2시간) 나. 정신질환자등의 의료·복지와 윤리(2시간) * 개별과정 8시간 가. 정신건강 임상심리 관련 교육 나. 정신건강 간호 관련 교육 다. 정신건강 사회복지 관련 교육

2. 법정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대상자

① 면제

- 근거법령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보수교육)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 면제를 받는 대상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보수교육 면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의 신규 취득자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1. 대학원에 간호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보건학 관련 전공을 이수 중인 사람 2. 1호에 준하는 사람으로 보수교육 면제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	--

② 유예

- 근거법령 : 시행규칙 제9조제2항2호에 따라 보수교육 유예를 받는 대상자는 각 호의 사유로 해당연도에 6개월 이상 정신건강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보수교육 유예	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1. 입원이나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 2. 육아, 가사, 유학, 연수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	--

- ※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의 실시, 면제 또는 유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3. 법정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신청

신 청 자	해당연도 법정보수교육에 면제 또는 유예 받고자 하는 자
신청시기	면제 또는 유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연도의 법정보수교육 신청 마감 전에 신청
제출서류	법정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
신청방법	관련증명서류를 국립정신건강센터 전문요원 관리시스템에 등록

※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시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기준 초과 증명서 제출시 불인정) [☎문의: 02-2204-0336 국립정신건강센터 담당자]

4. 이수확인증 신청 방법

- 정신건강전문요원 및 정신건강수련사회복지사 이수증 신청 방법 동일
- 국립정신건강센터 - 보수교육 이수내역 - 해당교육 이수증 출력

V. 연회비 안내

1. 연 회 비 : 연 50,000원
2. 입금계좌 : 하나은행 128-910012-83504 (예금주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회칙 일부 내용]

제8조(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9.14.> <개정 2018.04.13.>

- ① 본 회의 회칙, 제반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②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9조(회원의 권리)

- ① 정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 ② 본 회의 회원은 본 회가 발간하는 간행물을 배부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③ 본 회의 회원은 본 회가 주관하는 보수교육 및 연수교육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4.02.28.>

제10조(권리의 제한과 회복) <신설 2012.09.14.>

- ① 정당한 이유없이 회비를 완납하지 않은 기간이 과거 누적기간을 포함해 총 3년을 경과할 경우 회원의 권리가 제한된다. <개정 2018.04.13.>
- ② 권리가 제한된 회원은 다음 각 호를 이행함으로써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 <개정 2018.04.13.>
 1. 본 조 제1항에 의해 권리가 제한된 회원은 당해연도를 포함해 최근 3년간의 미납된 회비를 소급하여 납부한 후 회원의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8.04.13.>
 2. 본 조 제1항에 의해 권리가 제한된 회원이 권리를 회복하고자 하는 경우 위 1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이행한 후 회원자격관리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 권리회복을 승인받아야 한다. <신설 2018.04.13.>
- ③ 회원의 탈퇴 및 탈퇴한 회원의 재가입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8.04.13.>

Ⅶ. 협회원 가입 안내

1. 가 입 비 : 20,000원 (최초 1회 납부)
2. 연 회 비 : 연 50,000원
3. 입금계좌 : 하나은행 128-910012-83504 (예금주 :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4. 구비서류 (홈페이지 자료실 '각종 서식 및 기타자료' 게시판 참고)
 - 1) 가입원서 1부
 - 2) 사진 2매
 - 3)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 4) 가입비 및 연회비 납부증명서 각 1부 (송금증 및 이체확인증)
 - 5)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 제공 동의서
5. 제출처 : (05719)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28길 13, 거북이오피스텔 410호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

※ 협회원 가입 여부는 본 협회 홈페이지(<http://www.kamhsw.or.kr>) > 로그인 > 마이페이지 > 개인정보 수정 > 회원구분 에서 확인 가능하며, 비회원은 홈페이지 회원구분에 '손님, 일반, 조정'으로 표기됨.